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36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안도걸・정준호・양부남
전진숙・민형배・임호선
조계원・정진욱・이언주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의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및 제462조부터 제462조의4까지의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3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하 “보유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남은 잔여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고 소각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2.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만 보유·처분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이내에서만 보유·처분할 수 있다.
4. 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제341조의4제1항 단서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③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2조의2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를 “상장회사에”로 한다.

제635조제3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유처분계획에 따른 보유·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상장회사가 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11. 제341조의4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

유하려는 회사가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3호 후단, 제5호 후단의 기준을 각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1.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2.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날

②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주식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제342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경우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을 받았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그 채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의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및 제462조부터 제462조의4까지의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하 “보유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남은 잔여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고 소각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

	한 조건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2.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만 보유·처분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이내에서만 보유·처분할 수 있다. 4. 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

	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제341조의4제1항 단서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③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 상장회사에----------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생 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유처분계획에 따른 보유·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0. 상장회사가 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신 설>	11. 제341조의4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려는 회사가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3호 후단, 제5호 후단의 기준을 각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